



# 보험금 청구서

① 보험금 청구서와 ② 개인(신용) 정보 표준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③ 청구서류(병원서류 등)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청구 세부 내역

청구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술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원(골절)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사고연금 (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수령)					
사고 사항 [재해사고 필수 기재]	발생 원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	사고(발병)일시	년 월 일 시 분	사고장소	
	사고경위	질병의 경우 병명과 증상을, 재해의 경우 사고 원인과 내용을 기재			탑승차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승용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토바이 <input type="checkbox"/> 트럭
					탑승위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승객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행중

## 2. 피보험자(보험사고자) 정보

※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 정보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.

인적사항	성명		주민번호	-	휴대폰	-
------	----	--	------	---	-----	---

## 3. 보험수익자(보험금 수령자) 정보

※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표친권인의 인적 사항 및 계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적사항	성명		주민번호	-	휴대폰	-
	주소	보험금 심사지연 및 결과 안내장은 작성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			주택번호	-
	친권인 2		주민번호	-	휴대폰	-
계좌정보	수익자 본인 명의 자동이체계좌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(우측기재)	은행		예금주		
		계좌번호		수익자 본인 명의 계좌만 지급 가능합니다.		
해외정보	보험 수익자 국적, 실거주지(영업지)가 대한민국입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(국적: 실거주국: ) ※ 아니오일 경우 국적과 실거주국을 기재해야하며, '거래제한국가' 일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					

## 4. 안내서비스

※ 안내방법은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.

진행안내	<input type="checkbox"/>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	미체크시 SMS가 기본 발송됩니다.
결과안내	<input type="checkbox"/>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	접수 3영업일 경과시 지연 사유가 안내 됩니다. 미체크시 SMS 및 우편은 기본 안내됩니다.
	<input type="checkbox"/> FSR 결과 안내 미동의)	미체크시 접수 FSR에게도 SMS로 안내됩니다.

## 5. 필수 안내사항 확인 및 서명

보험업법 95조의 2 제 3, 제4항 등 법령의 안내사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(신용) 정보 표준동의서,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장 및 지급절차에 대한 안내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.

- 청구하신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(단, 지급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)에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요청하신 방법으로 지연 사유를 안내하며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위탁업체(손해사정법인)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	수익자(청구자)	(서명)	대표친권자	(서명)
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

※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표친권자를 지정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라며, 대표친권자는 다른 친권인과 합의하여 친권을 행사하며 다른 친권인의 이의 제기시 본 청구로 인해 받은 모든 금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접수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내방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(100만원 이하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인(아래사항 기재)					접수인	
	대리인	성명:	(서명)	주민등록번호	-	연락처	-
	수익자와 관계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FSR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100만원 초과시 대리인과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

※ 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사고조작, 피해과장 등)는 범죄이며,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#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 정보 처리 표준동의서

##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※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 동의함에 체크 (☑) 하여 주시고,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의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이용 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###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, 보험금 지급 만족도 조사
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관련 업무

###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
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[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]

###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**거래종료 후 5년까지**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- 거래종료일은 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등), 채권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## 2. 개인(신용) 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### 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
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###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
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**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**

###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**거래종료 후 5년까지**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함)
- 거래종료일은 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일(상법 제662조등), 채권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

#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 정보 처리 표준동의서

## 3. 개인(신용)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###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 등)

###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동차보험에 한함)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
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
###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
###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기간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)

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[www.metlife.co.kr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4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<b>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)</b> 및 <b>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)</b> 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 하십니까?	질병, 상해정보 처리 동의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·운전면허증번호 등의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
피보험자	성명		(서명)	법정대리인 (미성년자의 친권자)	성명(부)	대표행사	(서명)
수익자	성명		(서명)		성명(모)	대표행사	(서명)
접수대리인	성명		(서명)	대표행사 체크 : 본인은 미성년자녀의 다른 법정대리인(친권자) 1인과 합의하에 대표하여 친권을 행사합니다.			

※ 대리인은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만 해당됩니다.



#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구분		구비서류	
공통	필수	기본	·보험금청구서 ·개인(신용)처리 표준 동의서
		추가	·부부 보장 상품의 경우 :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 확인)
공통	재해사고시	재해입증서류 (선택 1)	① 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 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시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: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
입원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,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		
수술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수술확인서 ② 진단서 ※필요시 수술 방법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		
통원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, 통원일자가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③ 처방전		
골절	·진단명(골절진단코드),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 ③ 입퇴원확인서 ④ 진단서		
태아	입원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,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※태아등재 후 신청 가능	
	유산/사산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유산 (진단서) ② 사산 (사산증명서 또는 진단서)	
	갑스	·진단명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, 진단일자, 통갑스 치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 진단서 ② 의사소견서	
진단	공통	·진단서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	
	암	·조직검사결과지 ·백혈병 :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·뇌/폐/췌장암 : (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) 방사선 판독결과지 ·간암 : (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)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결과지	
	뇌졸중	·CT,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	
	심근경색	·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근효소결과검사지 등)	
장해	기본	·후유장애 진단서 (신체운동장애 측정은 AMA방식) ※일반 진단서 대체 가능의 경우 아래 서류 확인	
	일반진단서 대체가능서류	① 만성신부전증: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평생투석상태 기재) ②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: X-RAY판독결과지 ③ 장기이식 또는 장기 적출: 진단명 및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	
사망	공통	선택	①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②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 ③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 및 사망 신고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
		필수	·재해사고시 재해입증 서류 ·고객정보변경신청서 작성(지정수익자 또는 대표수익자 작성) : 회사양식
	사망시 수익자별	수익자 지정	·지정된 사망수익자가 내방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청구서 인감날인
		수익자 상속인	·사망 신고된 피보험자 기준 상속관계 확인 서류 (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) ·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작성(대표 상속인 지정) 및 내방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·내방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인감 날인
		수익자 미성년자	·미성년자의 친권확인을 위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·친권인(후견인)의 신분증 사본 (비내방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)
*해외병원	·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합니다. ·피보험자의 인적사항, 진단명,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 인적사항, 의료기관 직인이나 주치의의 서명이 날인된 원본서류만 인정됩니다.		

·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(<http://www.minwon.go.kr>)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 
·의료기간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<http://www.hira.or.kr>) 홈페이지(병원·약국-비급여진료비정보)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·보험금 접수 이후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청구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청구방법	금액한도	상세
직접방문	한도없음	가까운 고객센터 또는 지점 : 콜센터(1588-9600) 또는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metlife.co.kr">www.metlife.co.kr</a> )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편접수		주소 : (06211)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, 11층 클레임서비스팀(역삼2동, 메트라이프타워)
웹팩스	100만원 이하	콜센터(1588-9600) 혹은 지점에 전화하여 웹팩스 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접수
PC	200만원 이하	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www.metlife.co.kr">www.metlife.co.kr</a> → 사이버창구 → 사고보험금 → 인터넷보험금청구 ※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
스마트폰		어플리케이션 : 메트라이프생명 모바일 창구 → 사고보험금 → 사고보험금청구 ※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

#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안내

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에 접수해 주시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
##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

- 사이버 / 모바일 창구를 통한 보험금 접수는 지급액 200만원 까지, 팩스 접수는 지급액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. (단, 사망, 장애, 진단비 청구는 접수 불가)
-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안내를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(☎ 1588-9600)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##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
-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. (단, 2015.03.12.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은 2년)

##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 안내

-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고객님이 신청하신 방법에 따라 담당자와 연락처를 통보하게 되며, 신청 하지 않은 경우 SMS가 기본으로 발송됩니다. (지점 및 FSR를 통한 접수시 SMS, E-mail 안내만 선택 가능합니다.)
-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접수중에 기재된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지급기일은 해당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회사는 단계별로 유선 설명, SMS, E-mail,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내역을 설명드립니다.
- 보험금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교부되며,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리 근거 및 사유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.
- 보험수익자 국적 및 실거주지가 거래제한국가일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

##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

- 회사는 보험금(급여금)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,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게 되며, 전화 및 우편은 기본으로 안내 됩니다.
-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콜센터(1588-9600)로 가능합니다.
-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(<http://www.klia.or.kr>)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
## 재심사 청구

-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 담당자에게 문의 혹은, 회사 홈페이지([www.metlife.co.kr](http://www.metlife.co.kr)) 또는 우편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: 당사홈페이지 > 전자민원접수 바로가기 > 민원신청
- ※ 우편접수: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,11층 메트라이프타워 클레임서비스팀 (당사 콜센터 1588-9600)

## 보험금 심사 진행 조회

- 보험금이 지급되면 고객님이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지급안내문이 발송되며, 미선택시 SMS 및 우편으로 지급안내문 발송됩니다.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[www.metlife.co.kr](http://www.metlife.co.kr)) 사이버 창구에 접속하시면 보험금 심사 진행결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청구시 SMS 또는 접수중에 기재된 담당 심사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손해사정사의 선임

- 회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병원방문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법인, 손해사정사 등 제3자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, 활동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고객님께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-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

보험계약자 등 부담	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보험회사 부담	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-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
-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4항)

##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, 계약시기별로 장해 판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 발급 전 콜센터(☎1588-9600)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 후 관련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※ 3차의료기관: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

## 의료심사

-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, 보험금 지급 사유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
##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안내

- 보험금 심사결과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(☎ 국번없이 1332)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